전문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운영 규정

제정 2021. 9. 28. 제3차 개정 2025. 10. 2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의10[이수과정(마이크로디그리)] 및 다전공 이수 규정에 따른 '전문과정(마이크로디그리)'[이하 '마이크로디그리']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10.19., 2025.10.21.)
- 제2조(정의) ① "마이크로디그리" 란 특화된 전문 분야나 융·복합 분야 중 교육수요자 맞춤 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, 일반적인 학위 과정보다 학습 내용의 범위가 좁고, 특정 역량 함 양에 집중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.
 - ② "모듈"이란 전공능력 또는 FIND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구성된 교과목 집합을 말한다.
 - ③ "이수 예정자"란 마이크로디그리로 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이수 중인 학생을 말한다.
 - ④ "이수자" 란 해당 마이크로디그리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이수증 발급 자격을 갖춘 학생을 말한다.

[전문 개정 2025.10.21.]

- **제3조(담당 부서)** ①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총괄은 교육기획팀이 담당하며, 학사행정은 학사지 원팀에서 지원한다.
 - ② 교육기획팀은 마이크로디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마이크로디그리 기획 및 컨설팅 운영
 - 2. 마이크로디그리 신설 및 개편 심의 지원
 - 3. 마이크로디그리 성과 관리 및 환류 체계 운영
 - 4. 마이크로디그리 관련 홍보 등

[전문 개정 2025.10.21.]

- **제4조(위원회)** 마이크로디그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심의하거나 보고 받는다.
 - 1. 연간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마이크로디그리 개설, 개편, 운영기간 연장 또는 단축, 폐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운영 결과 및 환류에 관한 사항
 - 4. 이외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사항

[전문 개정 2025.10.21.]

- **제5조(유형)** 마이크로디그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, 세부 유형 및 구성요건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 - 1. 단일전공 유형 : 동일 학과(전공) 전공 교과목으로만 구성
 - 2. 연계전공 유형 : 다른 학과(전공)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
 - 3. 교양 유형 : 교양 교과목으로만 구성
 - 4. 기초융합 유형 : 전공 교과목 및 교양 교과목으로 구성
 - 5. 심화융합 유형 : 가상학부 교과목으로만 구성

[전문 개정 2025.10.21.]

제6조(개설 요건 및 절차) ①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- 1. 편성학점 : 12 ~ 18학점
- 2. 이수학점 : 12 ~ 18학점
- 3. 이외 요건은 별도 지침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다.
- ② 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교원 또는 학과(전공)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교육기획팀에 제출해야 한다.
- 1. 개설 신청서
- 2. 운영계획서
- 3. 개설 관련 교원 회의록
- 4. 기타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
- ③ 마이크로디그리는 교육혁신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. 단, 총장은 교육기획팀 검토 및 교육혁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소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.

(신설 2025.10.21.)

제7조(운영) ① 마이크로디그리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마이크로디그리의 최소 운영기간은 최초 개설로부터 3년으로 하되,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장 또는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.
- ③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교육기획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- ④ 이외 교육과정 개편, 수업시간표 작성 등 수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.

(신설 2025.10.21.)

- **제8조(이수)** ① 학생은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과정의 이수예정 자로 자동 등록된다.
 - ②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유형 및 세부요건에 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 - ③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고, 이수한 과정명을 학적부에 등재한다.

④ 이수예정자 중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종료 전 또는 졸업 전까지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이수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.

(신설 2025.10.21.)

- **제9조(보칙)**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학칙」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연구처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 -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개설되는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단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(신설 2025.10.21.)

부칙

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 04. 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476, 2022. 10. 19.)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439, 2025.10.21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6조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마이크로디그리부터 적용한다.